

⊙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 - 4호

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월 14일

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

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

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정원 중 일부직급을 상향 조정하고, 행정수요의 신속한 대응과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운전직렬 정원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함

2. 의견 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(참조

: 운영지원과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ftc.go.kr>) 상단의 “정책/제도 -입법예고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

○ 전화 : 044-200-4185 (FAX : 044-200-4192)

○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(우편번호 : 30108)